

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5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5. 9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5. 5. 9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5. 5. 2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장찬호)

가. 제안이유

- 와도 야영장 시설은 섬 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로,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 관리수탁자 선정이 필요함
- 「살고 싶은 섬」 가꾸기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을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원으로 환원하여 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
-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강화하고, 섬 지역 내 야영장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- 3) 「살고 싶은 섬」 가꾸기 가이드라인(경남도, 2022. 4.)

다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와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
- 2) 위탁대상: 와도 야영장

- 위 치: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(와도) 1572, 1582번지 일원

- 시설규모: (신설) 게스트하우스(2동, 80㎡), 방문자센터(1동, 49.2㎡)
(리모델링) 야영장(1동, 62.78㎡), 마을회관(1동, 87㎡)

. 오수처리시설: 6톤/일

- 3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2년(예정: 2025. 6. ~ 2027. 5.)
- 4) 위탁방법: 와도 마을협동조합 수의계약
 - 근거: 「살고 싶은 섬」 가꾸기 가이드라인
- 5) 위탁사무의 범위: 와도 야영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
 - 야영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 - 야영장 이용자 대상 선박 운항
 - 야영장 이용자 안전관리 및 민원해소
 -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
 - 기타 야영장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라. 추진일정

- 1) 2025. 5.: 야영장 시설 운영 위탁 군의회 동의
- 2) 2025. 6.: 수탁자 선정 완료 및 운영 개시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“살고 싶은 섬” 가꾸기 사업으로 준공된 와도 야영장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와도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“살고 싶은 섬” 가꾸기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5. 22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